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1
----------	-----

2024. 4. 30.(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4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가.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등 개정
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회의의 소집권자·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2022. 6. 10. 개정 사항을 보면,
 -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법 제91조 제2항),
 -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91조 제4항).
-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은 2023. 6. 9. 개정을 통하여 지명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장장·부위원장·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8조).
-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 조례의 목적·위원회 구성 등 모든 조문이 개정 대상이고,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경우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24. 3. 15.~'24. 4.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국토교통부의 시·도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맞춰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